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2978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29795(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항◇○○○○○○○○○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00동 ___-__ 000000빌딩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장종필

피고(반소원고), 피○♣♣♣♣♣♣♣♣

이▷♠ (xxxxxx-xxxxxxx)

성남시 중원구 0000동 ____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가단157999(본소), 2007

가단210364(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09. 1. 15.

판 결 선 고

2009. 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89,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2007. 3. 7. 20:00경 서울 서초구 OO동 내곡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_____호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307,9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8,118,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당심 판결선 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반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8,829,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의 '갑 제2, 6호 증' 다음에 '을제13호증 내지 을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피고는 1996. 4. 6.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2007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자동차운전종사자

10년 이상 남자 경력자에 해당하는 통계소득 월 2,197,647원(1,824,413원 + 4,478,816원/12월, 원 미만 버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입원치료기간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3. 8.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2007. 5. 1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 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갑제8호증, 을제4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입원기간 중인 2007. 3. 26., 같은 해 4. 16., 같은 해 5. 7., 같은 해 6. 4. 총 4회에 걸쳐 ♥■■■■과대학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러 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5. 3.경에도 외출하였고, 같은 달 11. ▶◇자동차공업사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다음 날 이를 찾아오는 등 수시로 외출한 점, 2007. 5. 1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 정형외과에서의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치료비 1,051,870원 중 진찰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합계 275,680원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원료 및 식대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0%로 인정한다.

(4) 후유장해 인정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가 수상 후 3년간 1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8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5) 계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일수입 손해액을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 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269,219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액

(1) 기왕 치료비 : 1,220,620원(을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 피고는 향후 견봉하 감압술 및 관절 유리술 비용으로 1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피고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 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2,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6,489,839원(일일수입 3,269,219원 + 기왕치료비 1,220,62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3. 7.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송우철 _____

 판사 최치봉 _____

 판사 홍은숙 _____